

감 사 보 고 서

교육부 장관 귀하

학교법인 을지학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 을지학원(을지대학교)의 2018회계년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 학교법인 을지학원(을지대학교)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

2019년 4월 15일

학 교 법 인 을 지 학 원

감 사 송 창 섭 (인)

감 사 이 정 호 (인)

피감사 기관장

2019년 4월 15일

학 교 법 인 을 지 학 원

이 사 장 구 성 (인)



피감사 기관장

2019년 4월 15일

을 지 대 학 교

총 장 홍 성 (인)



감사보고서

학교법인 을지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을지학원 (을지대학교)의 2018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19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을지학원(을지대학교)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을지학원(을지대학교)의 2019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(다음 : 지적사항 있으면 나열 또는 별첨함)

2019년 4월 15일

학교법인 을지학원

감사 송 창 섭 (인)

감사 이 정 호 (인)

피감사자(입회인)
직명 이사장
성명 구성희

